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8 ~ 2

제출연월일	2008. 1. 1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 (2007. 12. 13. 공포)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본청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며,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목적 관련규정 근거조항 개정(안 제1조)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

- ⇒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- 나.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 조정(안 별표)
- 주민생활지원과장 : 5급 ⇒ 4급 또는 5급
- 다.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 조정(안 부칙 제2항)
- O 사업별예산제도 업무 : 6급1, 7급1 ⇒ 삭제
- 라. 별표 :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O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O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7.12.20. ~ 2008.1.9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 중 "680명"을 "678명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중 "666명"을 "664명"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6명(6급2명, 7급2명, 8급2명)중 3명(혁신분권 업무: 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3명(복식부기업무: 6급1명, 8급1명, 일제강점하피해조사: 7급1명)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 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</u>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원의 총수) 거창군 정원의 총수는 <u>680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6명</u> 2. (생 략)	
부칙(개정2007.07.23. 조례 제1841호)	<u> 부칙</u>
<u>한다.</u>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	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6명(6급2명, 7급2명, 8급2명)중 3명(혁신분권업무: 6급1명, 7급1명, 8급1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3명(복식부기업무: 6급1명, 8급1명, 일제강점하피해조사: 7급1명)은 2008년 12

[별표]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الر الر	ਮ =1	의회	직속기관			ין פן י	0	ы
		총계	본청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사업소	o 拍	면
총 계		678 (680)	269 (271)	14	133	61	72	59	45	158
정	무 직	1	1							
일반직	소계	532 (534)	221 (223)	8	77	23	54	39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3 (2)	2 (1)	0	1	0	1	О	0	0
	5급	31 (32)	11 (12)	3	2	1	1	3	1	11
	6급	142 (143)	63 (64)	3	10	5	5	10	12	44
	7급	164 (165)	81 (82)	2	24	10	14	12	12	33
	8급	127	50	0	35	5	30	8	10	24
	9급	63	13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0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	4	1	0	2	2		1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5	6	6	4	2	19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9	1	1	1	0	5	1	1
	10급	38	20	2	2	2	0	7	3	4